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신설〉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7)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44)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3)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56)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
1. 인구감소지역 사업장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조승환의원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박상웅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6
2.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박상웅의원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8항)	18
3.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유지·관리 비용 지원(박상웅의원안 제24조제7항 신설)	23
4.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설·증축에 대한 조세 감면(이달희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26
5.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임미애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29

【박상웅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3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6.
3. 회부연월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 신설 등).

【이달회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5.
3. 회부연월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승환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돕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임미애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3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3.
3. 회부연월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사업장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조승환의원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박상웅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현 행	조승환의원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u>

현행	조승환의원안
<신설>	다)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박상웅의원안
<신설>	제28조의2(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조승환의원안	박상웅의원안
○ 인구감소지역으로 <u>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u> 지원하는 사업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소기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u>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u>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 인구감소지역 소재 <u>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u>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 인구감소지역 소재 <u>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u> 의 일부 지원	

첫째,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취업’ 시 지원하는 사업, ‘창업’ 시 지원하는 사업 외에¹⁾ 사업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기업이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외부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수단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지/이전 지원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재입지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수도권과의 거리, 지가변동률, 실업률)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첨단산업보다는 기초산업에서, 서울보다는 경인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유효성이 높게 나타났다.²⁾

다만,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보다 넓은 범위에서 관련 부처에 따른 지방 이전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³⁾ 및 동법 시행령⁴⁾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2) 조광래, 구교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성 분석 :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5, no.0 (2015): 1337-1352.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 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를 운영하여('23년 예산 국비 2,051억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균형발전 상위지역·중위지역·하위지역별로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수도권인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경기도평택군, 경기연천군 4지역을 제외하고 85개의 지역은 균형발전 중위지역 또는 균형발전 하위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음.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5]]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지역구분>

지역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균형발전 상위지역	부산광역시(3)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대구광역시(3)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대전광역시(2)	서구, 유성구
	울산광역시(3)	남구, 북구, 울주군
	충청북도(1)	청주시
	충청남도(2)	아산시, 천안시
	경상북도(1)	구미시
	경상남도(5)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1)	제주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부산광역시(10)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대구광역시(5)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광주광역시(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울산광역시(2)	동구, 중구
	강원특별자치도(12)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충청북도(6)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청남도(10)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예산군

지역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전북특별자치도(4)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라남도(9)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경상북도(10)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경상남도(6)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강원특별자치도(6)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4)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남도(3)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전라남도(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경상북도(11)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경상남도(7)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표시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85개), 수도권인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4개)은 제외되어있음.

이외에도 ①수도권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②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의 지정, ③수도권 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④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현행 지방이전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제도]

지원제도(소관부처)	내용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u>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지특법 제75조의5)</u> - <u>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 감면 등(조특법 제6조)</u>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u>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동한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특법 제61조, 제63조의2, 지특법 제79조)</u> - <u>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특법 제60조, 제63조, 지특법 제80조)</u>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 외 시·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 행정적·재정적, 전문가 지원 등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 공장설립 지원(<u>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u>)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고용의 촉진),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u>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증설,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원</u>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자금지원 등)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 - <u>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u>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시·도지사가 지정·개발

둘째,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의 경우 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유효하고 지역 수요가 높은 특례임을 감안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⁵⁾과 「지방세특례제한법」⁶⁾ 등 조세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 1. 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규정 실익이 적으며,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조세감면 근거를 규정할 경우 납세자가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세제 관련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50%씩 부담하도록 하고,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⁸⁾

7)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은 위 특례들과 유사하게 직장가입자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치·이전하려는 사용자의 재입지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규모, 보수규모, 재산규모, 종합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⁹⁾ 소득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요건만으로 고용보험료를 국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가의 안전망으로, 시혜 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도 최소한의 부담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개정안은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상웅의원안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제8항).

현행	박상웅의원안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 ② (생략)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u>보육환경 개선</u> 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시설 등을 포함한 <u>보육환경의 유지·관리 및 개선</u> -----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⑦ (생략)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 .	⑧ ----- ----- ----- ----- ----- -----하고, <u>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안 제21조, 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①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②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보육환경의 범위에 시설을 명시하고, 어린이집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¹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¹²⁾,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¹³⁾ 등 어린이집 시설

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12)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월 11만원, 2024년)

13)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합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월20만원)을 지원

유지·관리 비용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원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운영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유치원 및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방과후활동 및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학교의 설립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 대학 등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유치원, 초·중·고(학교) 통합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② 폐교 시 교육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유치원 및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 보조 가능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가능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한 설립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⑦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⑧·⑨ 대학 등 교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⑩ 지방대학에 대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음.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개정안은 교육 분야의 특례를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교육시설¹⁴⁾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전체 교부금의 3%) 중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교부금의 30%)에 따라 소규모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해당 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학교로서 학교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강당 및 체육관의 신·증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¹⁵⁾ 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교원이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많아지므로 교직원 수가 적고 교원 1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운영은 교원의 업무를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 10. (생략)

15)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2023.1.

증가시켜, 소규모학교에 대한 물리적 자원의 추가 지원 외에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¹⁶⁾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¹⁷⁾ 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6) 한국교육개발원, 「소멸 위기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전략 탐색」, 2022.12.31.

17)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1.15.

3.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유지·관리 비용 지원

개정안은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상웅의원안 제24조제7항 신설).

현 행	박상웅의원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법」 제85조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밖의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¹⁸⁾ 이에 따라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법」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¹⁹⁾

18)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9)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보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의 건설과 같은 사업 비용 일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 및 이동 편의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로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점,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원 등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교통분야 사업 현황을 보면,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 사업,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사업,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지하통로 건설, 경호강 200리길 자전거도로개설 등의 교통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관리 주체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교통분야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단체명	투자사업명	기금액
1	강원 정선군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케어	800
2	강원 철원군	대교천 협곡 인도교 설치사업	3,500
3	충북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4,800
4	전북 무주군	무풍-안성 고랭지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2,000
5	경북 울릉군	친환경 스노우멜팅시스템 구축 사업	714
6	경남 사천시	실안노을빛 걷고싶은거리 조성	830
7	부산 서구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사업	1,500
8	대구 남구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지하통로 건설	2,000
9	인천 동구	경호강 200리길 자전거도로개설	700
10	경북 군위군	스마트 안심거리 365	1,440

[특례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구분	부처 의견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도로법」은 <u>원인자 분담 원칙</u>에 따라 국도 관리주체를 동(洞)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분리 중 - 인구감소지역은 동(洞)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대다수로, 동(洞)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국고 보조를 집중하고 있는 현 체계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취지에 더 부합
	국토교통부 (신중검토)	「도로법」 제85조에 따라 <u>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부담</u>을 해야 하므로, 국가의 추가적인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설·증축에 대한 조세 감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축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달회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이달회의원안
<신설>	제28조의2(조세의 감면)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²⁰⁾ 이에 따라 수도권 밖에

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생략)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있는 인구감소지역도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축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특정하여 기업의 투자나 유치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의 세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규정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생략)

21)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한국지방세연구원, 2024.5월)

법인·소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43호)이 개정안과 같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2024.7.26.)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과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임미애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현 행	임미애의원안
<u><신 설></u>	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²²⁾

2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고,²³⁾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생략)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로도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며,

산업단지가 주로 입지하게 되는 공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위락시설 및 묘지관리시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및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지구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예외를 둔 조항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해당 용도지구 및 농지법 등 개별법령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